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 - 69

제안연월일 : 1999. 11. 19.
제안자 : 거창군수

■ 개정이유

- 서민층의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종전 5세대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이상 주택보유자로 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세대 이상의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수도권지역의 기능집중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및 과밀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심화되어 '99.8.23 경제정책 조정회의시 확정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시 세제감면을 통하여 지방경제의 성장기반을 마련코자 함.

■ 주요골자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안 제12조)
 -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완화 : 5세대 이상 ⇒ 2세대 이상
-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안 제20조의4 신설)
 - 감면대상 :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공장을 광역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내용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전액면제,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경감”
 - 감면시한 :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 정하여 한시적 운영
 - 추정대상
 - 기업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에 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한 때

■ 개정근거

-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경남도 세정13415~10935('99.10. 2)
-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경남도 세정13415~11108('99.11.1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본문 중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에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지역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2 내지 제20조의3 (생략) <신 설></p>	<p>제12조2 내지 제20조의3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 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 사무 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 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 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 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 전(광역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 득한 후 2002년 12월 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 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 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 징한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지역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p> <p>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p>